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 3. 27.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 출 일 자 : 1995년 3월 16일

○ 회 부 일 자 : 1995년 3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 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 2차 교육사회위원회(1995.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보사환경국장 신 현 수)

가. 제 안 이 유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함.

4. 주 요 골 자 :

○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조정

1) 에담프톨 + 피리지니마이드 + 리팜피신 = 2,600원에서 2000원

2) 에담프톨 + 피리지니마이드 + 카나마이신 = 1,800원에서 2000원

- 3) 리팜피신 + 피라지나마이드 + 카나마이신 = 3,400원에서 2000원
- 4) 리팜피신 + 가나마이신 + 에담프톨 = 2,400원에서 2000원
- 5) 에담프톨 + 피라지나마이드 = 1,000원에서 2000원
- 6) 에담프톨 + 리팜피신 = 1,600원에서 2000원
- 7) 피라지나마이드 + 리팜피신 = 2,600원에서 2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항결핵제 처방별 수수료 징수기준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 결핵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치료약품비 일체를 국비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며, 보급수수료는 약값이 아니라 환자가 약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의식을 주지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에서는 처방별 보급수수료를 차등징수 하던 것을 처방과 관계없이 1회 투약시 동일한 금액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 " 없 음 "

5. 토론요지 :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 없 음 "

8. 조 례 안 : 별 첨

9. 신구조문대비표: 별 첨